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 승인·변경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계획과 같이 다소 광범위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인력과 같이 현실적으로 사전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역시 정비하는 한편, 용역등 관련 승인 기준의 문구가 다소 불분명하여 이를 고시로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 승인·변경승인·변경신고 사항 정비(안 제2조)

승인·변경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계획과 같이 다소 광범위한 개념을 삭제하는 한편,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인력과 같이 현실적으로 사전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내용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도모함

나. 용역등 관련 승인 기준 고시 위임(안 제3조)

용역등의 승인 기준에 있어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라는 문구의 의미가 어느 정도의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고시로 정하게 하여 예측 가능성을 고양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익금의 사용 계획”을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한다.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제2조제1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사업계획의 내용 중 수익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시설 또는 인력”을 “시설”로 한다.

가. 사업장 소재지

나. 시설

다. 수익금의 사용계획

제3조제1항제2호 중 “기술”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제2항 중 “[] 사업계획의 내용 중”을 “[]”로, “시설 또는 인력의 변경”을 “시설의 변경”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발급사유: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국 가유공자등단체는 법 제18조제 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 ----- ----- ----- ----- ----- -----.
1. <u>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 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 한 사업계획</u>	1. <u>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u>
2. <u>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2. ----- <u>다음 각 목의 사항</u> <u>가. 사업장 소재지</u> <u>나. 시설</u> <u>다. 수익금의 사용계획</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 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 ----- ----- -----.

1. (생 략) 2. <u>사업계획의 내용 중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 또는 인력</u>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생 략) 제3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국가유공자 등단체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생 략) 2. <u>기술</u>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를 직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② ~ ④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수익사업</u>----- ----- <u>시설</u>----- ----- 3. (현행과 같음) 제3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u>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